

7.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중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195호 1999. 6. 11.

개 정 이 유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제도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제도로 변경되는 등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1999. 1. 29, 법률 제5730호 및 1999. 4. 15, 법률 제5969호)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책임기술자의 정기적인 보수교육이수의무를 폐지하는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규제관련 사항을 개선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 요 골 자

-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간관리주체로부터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4월 15일까지 그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나. 종전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책임기술자는 3년마다 5일 이상의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폐지하여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2).
- 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 등에 관한 장부의 서식을 정함(제8조제1항).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영 제2조제4항”을 “영 제2조제5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공관리주체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3월 15일까지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관리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매년 3월 15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주무부처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그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 본문중 “매 3년마다 1회이상 이수한 자”를 “이수한 자”로 한다.

제5조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고

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는 별표 1과 같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및 제1항중 “지정신청서”를 각각 “등록신청서”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지정신청서”를 “등록신청서”로 하며, 동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중 “법 제20조”를 “법 제9조의2”로 하며, 동항제3호 본문중 “기술인력의 보유현황”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지정받고자”를 “등록하고자”로 한다.

1의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의3 등록하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대장 및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교부대장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7조의2 단서중 “지정받고자”를 “등록하고자”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장부의 비치 등) ①안전진단전문기

관이 법 제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는 기술인력보유현황 등의 장부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 기술인력보유현황 : 별지 제6호서식
2. 장비보유현황 : 별지 제7호서식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 : 별지 제8호서식

②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 20일까지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중 “영 제12조제8호”를 “영 제12조제1항제10호”로 한다.

제11조 본문중 “영 제15조제4항제3호”를 “영 제17조제3호”로 한다.

제19조중 “법 제24조”를 “법 제9조의6제4항”으로,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시설물명란의 제4호란 및 제5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이 흘러 넘치는 부분의 콘크리트 파손 및 누수 - 기초지반의 누수, 파이핑 및 세굴
------	--

5. 상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문의 작동불량 - 관로이음부의 불량접합 - 관로의 파손, 변형 및 부식
--------	--

별지 제2호서식 앞면의 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지정신청서”를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신청서”로 하고, 동면중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신청합니다.”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의 구비서류란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란 제2호중 “법 제20조”를 “법 제9조의2”로 하며, 동란 제3호 본문중 “기술인력의 보유현황”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으로 하고, 동서식 뒷면의 신청인란중 “지정결과통보”를 “등록결과통보”로 한다.

1의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의3. 등록하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지정서”를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으로 하고, 동서식중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

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전의 별지 제5호서식)의 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지정대장”을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대장”으로 하고, 동서식 분야란중 “지정”을 “등록”으로 하며, 동서식중 “지정일자”를 “등록일자”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전의 별지 제4호서식)의 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지정서교부대장”을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교부대장”으로 하고, 동서식중 “지정번호”를 “등록번호”로,

“지정연월일”을 “등록연월일”로, “지정증교부”를 “등록증교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하고, 동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서식]

기술인력보유현황

진단업체명(등록번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술종목	기술등급 및 자격증 번호	자격유효 기간	입사 연월일	퇴사 연월일	비고

1. 기술종목 : 토목·건축 등 기재
2. 기술등급 및 자격증번호 : 학력·경력자 내용 기재
3. 자격유효기간 : 교육 등 이수내용 기재

30307-12411일
1999. 4. 1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별지 제7호서식]

장비보유현황

진단업체명(등록번호):

구 분	장 비 명	규격 및 모델번호	검사유효 기 간	구입 및 폐기연월일	보관장소	비고

1. 구분란에는 공통 또는 진단분야를 기재
2. 비고란에는 자기소유 또는 임차 등 기재

30307-12511일
1999. 4. 1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별지 제8호서식]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

진단업체명(등록번호) :

(앞 면)

① 구분	② 분야	③ 시설물명	④ 소재지	⑤ 종별	⑥ 준공연 월일	⑦ 관리 주체	⑧ 실시 기간	⑨ 수주 금액 (백만원)	⑩ 상태 등급	⑪ 조치 현황

30307-12611 일
1999. 4. 1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 작성요령

- ①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정기, 기타 등)으로 구분한다.
- ② 교량, 터널, 건축물 등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시설물의 범위에 따라 구분한다.
- ③ 대상시설물의 명칭을 기재한다.
- ④ 대상시설물의 소재지를 기재(시·군·구, 읍·면·동까지 기재)한다.
- ⑤ 대상시설물의 1종, 2종 및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⑥ 대상시설물의 준공 연월일을 기재한다.
- ⑦ 대상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소유자 등을 기재한다
- ⑧ 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간을 기재한다.
- ⑨ 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수주금액을 기재한다(하도급을 받아 시행한 경우에는 하도급으로 별도 표시).
- ⑩ 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 상태등급(A, B, C, D, E)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 ⑪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사항을 기재한다.

[별지 제9호시식]

(앞 면)

검사공무원증

소 속

직 위

직 급

유효기간 부터 까지

사진
(3cm×4cm)

위 사람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업무현황이나 관련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설교통부장관

인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6(지도·감독) ①~② (생략)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4조(과태료) ① (생략)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 4. (생략)

5. 제9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